발 행 인 : 관악구청장
편 집 인 : 홍보과장
전 화 : 02-879-5255

관악구보

선람	기관의 장

제2009호 2021. 7. 1.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고 시

◉ 제83호: 정창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3
◉ 제8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3
◉ 제85호: 도로명주소 고시 ····· 4
◉ 제88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유예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 5

공 고

◉ 제1139호: 녹지활용계약 체결 현황 공고 ····· 12
◉ 제11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 12
◉ 제1148호: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13
◉ 제1155호: 폐기 직인 공고 ····· 16
◉ 제1157호: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 17
◉ 제1159호: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19
◉ 제1160호: 공시송달공고 ····· 19
◉ 제1162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처분(사전고지 및 독촉고지)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20
◉ 제1167호: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 공고 ····· 21
◉ 제1168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22
◉ 제1169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22
◉ 제1170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25
◉ 제1176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7
◉ 제1177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4
◉ 제1178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5
◉ 제1180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징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9
◉ 제118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0
◉ 제1184호: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사항 공시송달 공고 ····· 46

기 타

◉ 제2021-17호(주차): 공영주차장 미납주차료 납부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 공고 ····· 46
◉ 제2021-18호(주차): 부정주차요금 미납차량 납입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 49
◉ 제2021-19호(주차): 공영주차장 미납주차료 납부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 공고 ····· 51

공											
람											

관 악 구

고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1-83호 정창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22-83호 정창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창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622-83 / 1,435.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시행자명	대표자	주소
정창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나선수	-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6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1.06.22
6. 건축물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높이(m)	건축물의 주용도
1,435.0	44.84	183.38	2,700.44	17.5	공동주택

7.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지하1층/지상6층, 도시형생활주택 4개동(40세대)
8. 분양·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54 (54.66㎡)	53 (53.23㎡)	52A (52.99㎡)	52B (52.81㎡)	51A (51.33㎡)	51B (51.33㎡)	51C (51.82㎡)	47 (47.03㎡)	42 (42.68㎡)	40 (40.49㎡)
4세대	4세대	5세대	5세대	10세대	8세대	1세대	1세대	1세대	1세대

9.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관계서류는 관악구청 주택과(☎ 02-879-6324)에 비치 보관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 제2021-8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점용허가 기간연장 처리하였기에, 하천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하천점용허가

1.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주식회사 케이티 구로지사
 - 주 소: 서울시 관악구 조원중앙로1길 26
2.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점용위치: 관악구 신림동 1472-*
 - 점용면적: 6㎡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하수관(4㎡), 하수밸브 개폐함(2개:2㎡) 설치
4. 지 목: 하천
5. 점용기간: 2021.04.28 ~ 2026.04.30.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1-85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관악구 봉천동 27-2, 27-7	관악구 행운1길 125	2010-06-03	행운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왼쪽으로 분기되는 1번도로	행운동
관악구 신림동 1472-1	관악구 관천로 52	2010-06-03	관악구의 도림천 주변을 지난다는 의미에서 유래	신사동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비고
관악구 남부순환로166길 34	2021년 6월 23일	건축물대장말소	신원동
관악구 신림동1길 10	2021년 6월 23일	건축물대장말소	신림동
관악구 남부순환로224길 21	2021년 6월 23일	건축물대장말소	낙성대동
관악구 관악로11나길 25	2021년 6월 24일	건축물대장말소	청룡동
관악구 남부순환로200길 29	2021년 6월 24일	건축물대장말소	청룡동
관악구 남부순환로239길 45	2021년 6월 24일	건축물대장말소	행운동
관악구 남부순환로248길 78-20	2021년 6월 24일	건축물대장말소	인헌동
관악구관악로30길1	2021년 6월 25일	건축물대장말소	청림동
관악구 관악로30길 5	2021년 6월 25일	건축물대장말소	청림동
관악구 관천로19길 57	2021년 6월 25일	건축물대장말소	신사동
관악구 난곡로74길 95	2021년 6월 25일	건축물대장말소	신사동
관악구 신원로3길 42	2021년 6월 25일	건축물대장말소	신원동
관악구 장군봉11길 14	2021년 6월 25일	건축물대장말소	청룡동
관악구 관악로11나길 27	2021년 6월 28일	건축물대장말소	청룡동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02-879-6635)에 문의 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으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효력이 발생하여 법정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1-88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유예에 따른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유예 승인('21.6.30.)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적용기간: '21. 7. 1.(목) 0시 ~ 7. 7.(수) 24시
2. 대 상: 서울시 관악구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4.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경고,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5. 업종별 방역수칙

1 목욕장업(2그룹에 해당)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①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실시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 확진자 발생지역은 2주간 검사 실시(집단감염상황 종료시까지) *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전수검사 대상에서 제외 ② 출입자 명부 관리 - 이용자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또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 고령자, 2G폰 등 전자출입명부 이용 불가 시 예외적으로 본인확인(신분증 제시) 후 수기명부 작성 가능 * 성년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	①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또는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 * 고령자, 2G폰 등 전자출입명부 이용 불가 시 예외적으로 본인확인(신분증 제시) 후 수기명부 작성 가능 * 성년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 ②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 권고) ③ 이용시간 1시간 제한 준수(강력 권고) * 이·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④ 공용물품 사용수칙 준수 ⑤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③ 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 게시 *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 권고) ④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 다만, 횟수권 할인구매는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신규발급 가능 ⑤ 이용시간 1시간 제한(강력 권고) 및 안내판 게시 * 이·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⑥ 공용물품 사용 시 아래사항 준수 안내 - 음료컵: 사용 금지 - 평상: 2m(최소 1m) 간격 유지 * 1인용: 2m(최소 1m) 간격 배치 * 다인용: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게 구분막, 구분선 설치, 손소독제 의무 비치 ⑦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⑧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⑨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금지 ⑩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소독대장작성) ⑪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찜질방 등 발한시설의 경우 환기횟수 증가 ⑫ 방역관리자 지정 ⑬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⑭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목욕장 앞에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인원 게시 *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⑮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⑥ 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⑦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⑧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이용인원 제한 준수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거리두기 ⑨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⑩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⑯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거리두기 ⑰ 샤워시설, 옷장 한 칸 띄어 사용하도록 한 칸씩 잠금조치 ⑱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⑲ 공용물품 사용장소 이용자간 최소 1m간격 유지되도록 구획 표시 ⑳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2 이 ·미용업(3그룹에 해당)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 수칙	**①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③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④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 음식물 섭취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⑥ 손씻기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종사자는 수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⑧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⑨ 소독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⑩ 기타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⑪ 손님 예약제 운영	
	⑫ 손님 음료 제공 금지	
추가 수칙	**① 대화자제**	
	■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 면도나 메이크업, 얼굴관리 등 부득이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 대화 자제,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
★ 추가 적용 수칙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이용인원 제한(시설신고·허가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어앉기

3 숙박업(기타시설에 해당)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①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③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④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⑤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공용공간 내 머무는 시간 최소화하기
	⑥ **환기하기**	
	■ (공용공간)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객실) 퇴실 후 환기	■객실 내 수시 환기
	⑦ **소독하기**	
	■(객실) 퇴실 후 소독 (공용공간)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⑧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추가수칙	①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안내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②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시설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시설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
★ 추가 적용 수칙	①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②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③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②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③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이용 금지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시설내 공용공간 수칙>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대화 금지 안내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배치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대화 자제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대화 자제

탕비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 창구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6.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제1항제2호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 (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년 7월 1일 0시부터

8.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위생과

공 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1139호 녹지활용계약 체결 현황 공고

우리구(관악구)와 “관악구 신림동 산106-18번지 소유자가 아래와 같이 녹지활용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녹지활용계약 구역: 관악산도시자연공원 구역 관악구 신림동 산106-18번지
2. 녹지활용계약 목적
- 녹지활용계약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 공원(녹지) 기능 제공

3. 구역의 위치(지번), 면적, 관리(계약)기간

토지 위치 (공원명)	지 목	체결면적(㎡)	계약기간
관악구 신림동 산106-18번지 (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	임야	1,187m²	2021. 7. 1.~2026. 6. 30. (5년간)

4. 공고방법: 관악구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5. 열람장소: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 02-879-6525)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11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위반한 아래의 영업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7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의거 사전 처분과정을 거쳐 독촉고지 및 부과처리를 진행하였으나, 해당기일까지 납부처리가 되지 않아, 동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규정에 의거 부과 및 독촉고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 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업소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07.01. ~ 2021.07.16. (15일간)
3. 의견제출기한 : 2021.07.16.(금)
4. 근거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8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2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5. 대상업소 및 공시송달 내역

연번	업 종	우 편 발 송 현 황			위반사항	처분내용	통보일	반송사유	비고
		업소명	대표자	주 소 지					
1	일반 음식점	노랑** 서울**	황문*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 (***동 ****호) (장기동, ********)	과태료미납	과태료 독촉고지	2021. 06.15.	폐문부재	
2	“	오신*	이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가길 *, ***호 (신림동, ****)	과태료미납	과태료 부과통지	2021. 06.15.	폐문부재	

6. 참고사항

- 위 공고대상자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제기) 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이 경과 될 경우에는 청구(제기)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며,

- 위 내용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관악구 보건소 위생과(☎ 02-879-72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1148호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제8조에 따라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하반기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융자개요

❑ 융자규모 : 27억원

❑ 융자조건

○ 융자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 융자한도 : 중소기업 1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 융자금리 : 연 1.5% (2021년 한시적 0.8%)

○ 상환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융자대상

○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에 한함)

- 융자 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한 업종(중소벤처기업부)【붙임 참조】

※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부동산, 신용보증서 등)가능자에 한하며 융자지원 계획공고일 현재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관악구 내 타 기금을 상환중인 경우 또는 지방세 및 국세 체납자는 융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2. 융자신청

❑ 신청기간 : 공고일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 소상공인정책팀(☎ 879-5746)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일정

❑ 심의일정 : 월 1회 개최 예정 ※ 심의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7월 21일 : 7. 5. ~ 7. 16. (접수분)

○ 8월 25일 : 8. 9. ~ 8. 20. (접수분)

○ 9월 28일 : 9. 6. ~ 9. 17. (접수분)

○ 10월 20일 : 10. 4. ~ 10. 15. (접수분)

○ 11월 24일 : 11. 8. ~ 11. 19. (접수분)

○ 12월 22일 : 12. 6. ~ 12. 17. (접수분)

※ 자금 소진 시 조기마감

4. 기금융자 절차

금융기관 사전상담	· 부 동 산: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887-3803 내선:312) · 신용보증: 서울신용보증재단 관악지점(☎1577-6119)
↓	
융자신청 접수	· 공고일 ~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과 방문접수
↓	
신청업체 융자심사 및 결과 통보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별도 결과 통보
↓	
융자지원	· 우리은행, 신용보증재단 담보평가 · 수탁금융기관(우리은행)을 통한 융자 실시

※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를 요구하며, 신청 전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관악지점에 담보평가액 확인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공장등록증명서(관악구 관외에 공장등록된 경우)

○ 특허, 신기술, 벤처기업확인서 등 확인증명서 사본(해당기업에 한함)

○ 시설구입 입증자료(시설자금에 한함) 및 수출실적증명서(해당기업에 한함)

○ 중소기업확인서(해당되는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확인서(해당업체에 한함)

6. 기 타

❑ 지원시기 :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융자금이 회수조치 및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될 수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7. 문 의 처

❑ 관악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 소상공인정책팀(☎ 879-5746)

< 붙 임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표준산업분류	업 종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표준산업분류	업 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1155호 폐기 직인 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 규칙 제11조 규정의 의거 2021. 7. 1. 조직 개편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폐기					
공인명	인영	규격	공인명	인영	규격
관악구 민관협치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정방형	관악구 민관협치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정방형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1157호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건축법」 제14조 등을 위반,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공 고 기 간 : 2021. 7. 1. ~ 2021. 7. 15.
나. 공 고 장 소 : 구보 및 우리구 홈페이지

다. 공 고 내 역

ㅁ처분당사자 및 처분원인 내역

연번	위반내역(무단증축)				소유주(지분)	주 소	사유
	행정동	소재지	층호수	면적(㎡)			
1	은천동	국회단지27길 ** (봉천동 635-***)	옥상	10㎡	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회단지27길 **	환부불능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표기, 미 시정시 이행강제금 부과**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법 제79조. 제80조**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관악구청	부서명	주택과	담당자	김영석
		주소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전화번호	879-6341
		전자우편주소	tyjj4701@ga.go.kr			팩스번호	879-7831
	제출기한		**2021년 7월 28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첨 부 1.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1159호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 말소 처분내역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 목 :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07. 01. ~ 2021. 07. 15.
3. 직권말소 처분일자 : 2021. 06. 11.
4.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5. 공고대상 :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자	소재지	처분내용
집단 급식소	2005-0094909	원유치원	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275 (봉천동)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021.06.11.)

6. 유의사항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위생과 (☎ 02-879-7256)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1160호 공시송달공고

관악구고시 제2019-108호(2019.10.04.)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관악구고시 제2019-142호(2019.12.26.)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1-10)] 내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금 지급 안내 송달불능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사 업 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악11-10)
2.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보상대행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3. 공시송달 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수용재결금 지급 안내
가. 공고기간 : 2021. 7. 1.(목)~2021. 7. 16.(금)(15일간)
나. 신청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다. 지급금액 :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송부된 수용재결서 정본 참조
라. 지급방법 : 현금보상
마. 소유권 이외 권리관계 존재 시 안내사항
압류, 가압류, 가등기, 예고등기, 근저당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말소·해제하거나, 관계인과 협의 후 권리 말소 등에 필요한 서류 및 구분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재결금 수령 가능합니다.

바. 기타사항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일 및 시간을 전화(02-3410-7626, 7629, 7631)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라며(토·일요일 휴무),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한 내 미신청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 의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공시송달 사유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산24-40	임야	96	1/4	강O장	주소, 주민등록번호 미상,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등초본 공용발급 요청하였으나 발급 불가, 등기부등본 주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O-O'로 수용재결금 지급 안내 하였으나 미송달
	산24-40	임야	96	1/4	서O석	등기부등본 주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O-O'로 수용재결금 지급 안내 하였으나 미송달
	산24-40	임야	96	1/4	윤O병	주소, 주민등록번호 미상,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등 초본 공용발급 요청하였으나 발급 불가, 등기부등본 주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O-O'로 수용재결금 지급 안내 하였으나 미송달

5. 보상관련 문의 : 손실보상금액, 보상시기, 방법,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수탁보상부[☎3410-7626, 7629, 76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1162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처분 (사전고지 및 독촉고지)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사전고지, 독촉고지)통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처 분 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처분
2.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3. 처분원인 :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등
4. 처분대상자 : (주)어떠카지 외 23건

구분	성 명 (법인명)	납세자 기본주소	과세년월	공시송달사유	등기번호
사전통지서	(주)어떠카지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91길 17,	2021-06	폐문부재	1078830256754
사전통지서	염*영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 13	2021-06	주소불명	1078830256935
사전통지서	(주)어떠카지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91길 17,	2021-06	폐문부재	1078830255127
사전통지서	전*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점로29번길 30,	2021-06	수취인불명	1078830286152
사전통지서	이*우	서울시 영등포구 가마산로69가길 2,	2021-06	보관기간경과	1078830286128
사전통지서	박*은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37길 61,	2021-06	폐문부재	1078830286109
사전통지서	박*준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 129	2021-06	수취인불명	1078830286156
사전통지서	이*민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376,	2021-06	폐문부재	1078830285746
사전통지서	박*옥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24번길 6-43,	2021-06	배달중	1078830286110
사전통지서	해주디앤씨	서울시 중구 퇴계로 61,	2021-06	수취인불명	1078830287762

구분	성 명 (법인명)	납세자 기본주소	과세년월	공시송달사유	등기번호
사전통지서	박*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 6,	2021-06	이사불명	1078830286112
사전통지서	하이원리빙텔	서울시 관악구신림로269 ,	2021-06	폐문부재	1078830287769
사전통지서	테라컴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178 위브더스 테이트 702동 1106호,	2021-06	주소불명	1078830287971
사전통지서	LE **** PHUONG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구룡2길 34-1,	2021-06	폐문부재	1078830288172
사전통지서	한솔네트웍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61,	2021-06	이사불명	1078830287969
사전통지서	김*수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471	2021-06	수취인불명	1078830285976
사전통지서	최*희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6길 18	2021-06	폐문부재	1078830285982
사전통지서	박*성	경남 김해시 율하2로126번길 18,	2021-06	폐문부재	1078830285985
사전통지서	NGUYEN*** NGAN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충렬로 8번길 18-1	2021-06	폐문부재	1078830288054
사전통지서	김*기	서울시구로구구로중앙로28길66	2021-06	수취인불명	1078830285983
사전통지서	진*선	서울시 구로구 남부순환로105라길 27	2021-06	보관기간경과	1078830285984
사전통지서	손*재	서울시 동대문구답십리로309	2021-06	보관기한경과	1078830285986
사전통지서	이*례	서울시 관악구 시흥대로 558, B동3층,	2021-06	폐문부재	1078830287965
독촉고지서	㈜남대문 장터마을	서울시 중구 남대문시장4길 42-1	2021-06	수취인불명	1078830289312

5. 공고기간 : 2021.07.01. ~ 2021.07.15.(14일간)
6. 게시장소 : 구보 및 우리 구 홈페이지
7. 기타사항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나. 과태료는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이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과태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하게 됩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악구 건설관리과(☎02-879-67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관악구 건설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1167호 운행정지 명령 자동차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 및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공 고 명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공고기간 : 2021. 7. 1. ~ 2021. 7. 15.
3.공고대상 : 서울83도8552(노*래) 1대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운행정지명령 사 유	운행정지명령일자	비 고
1	서울83도8552	라보롱카고	노*래	소유자의 요청	2021.6.28.	

4.공고방법 : 관악구 구보, 관악구 홈페이지
5.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02-879-68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1168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자체장에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지자체장의 자문기관인 재해영향평가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해야 하므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참조 : 안전관리과, 전화 : 02-879-5812, 팩스 : 02-879-7824, e-mail : kim1000@ga.go.kr, 주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7층)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 및 규칙의 입법안은 관악구 홈페이지(http://www.gwan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1169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개발사업 등이 수립·허가되는 과정에서 해당 개발행위로 인해 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홍수, 내수, 사면, 바람 등 재해유형별 피해와 피해를 유발하는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2조~4조)
다.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안 5조~1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참조 : 안전관리과, 전화 : 02-879-5812, 팩스 : 02-879-7824, e-mail : kim1000@ga.go.kr, 주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7층)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규칙의 입법안은 관악구 홈페이지(http://www.gwan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위임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성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

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除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 요청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안건을 미리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하여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의사일정 통보

3.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의 공정 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여야 하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 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현지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사업시행자·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 2021-1170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및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의거 생활폐기물배출방법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과태료 부과 불복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07. 01. ~ 2021. 08. 01.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공고 기간 내에 과태료 고지서를 관악구청 청소행정과(☏ 02-879-6214)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으신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부과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처분에 따른 공시송달대상자 명단

연번	과세번호	주민(법인)명	납세자기본주소	부과금액(원)	위반내용	반송사유
1	000406	백*욱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2	000407	전*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51,5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3	000409	오*택	서울특별시 관악구 당곡*라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4	000410	김*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5	000411	유*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다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6	000412	유*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당곡*다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7	000414	김*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8	000415	김*완	서울특별시 관악구 당곡*가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9	000416	권*철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나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10	000417	김*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가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11	000419	조*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가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12	000422	남*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마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13	000426	김*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14	000427	이*훈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15	000428	김*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16	000429	우*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17	000432	정*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18	000434	이*희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19	000435	손*건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20	000436	김*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21	000437	전*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22	000438	박*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23	000439	강*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24	000440	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25	000441	백*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26	000442	안*선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27	000443	김*영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28	000445	홍*빈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가길 **	51,5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29	000446	김*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길 **	51,5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30	000448	권*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나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연번	과세번호	주민(법인)명	납세자기본주소	부과금액(원)	위반내용	반송사유
31	000449	김*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32	000450	고*훈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33	000451	김*익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가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34	000452	양*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가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35	000453	김*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나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36	000454	정*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가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37	000455	김*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나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38	000456	최*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39	000459	박*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40	000461	김*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41	000462	강*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42	000463	오*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43	000464	김*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44	000466	강*진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51,5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45	000468	장*석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46	000469	윤*덕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47	000470	이*선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48	000471	김*웅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가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49	000475	박*종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원*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50	000476	홍*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길**	103,000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1176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안이유

자원봉사 캠프·운영 및 활동에 대한 정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캠프 관련 규정 신설(안 제2조제5호)

나.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14조의1)

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하도록 관련규정 명시(제13조)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 전화 : 02-879-5233, 팩스 : 02-879-7903, e-mail : 20121102179@ga.go.kr, 주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6층 자치행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관악구 홈페이지(http://www.gwan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가없이”를 “대가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원봉사캠프”라 함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

제3조제2호 중 “지역사회개발 · 보존”을 “지역사회개발·보존”으로 한다.

제4조 중 “강구하여”를 “마련하여”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자원봉사 배치”를 “자원봉사자 배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법」제40조”를 “「민법」 제40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0인”을 “20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센터 장”을 각각 “센터장”으로, 같은 항 중 “30일전”을 “30일 전”으로 한다.

제11조 중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 및 지원하고,”를 “자원봉사활동에 관한”으로 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원봉사활동진흥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13조제1항 중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자원봉사캠프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자원봉사자 포상 등)”을 “(자원봉사자 포상)”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중 “우수한 자”를 “우수한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 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대가 없이 ----------.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 사람을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자원봉사캠프”라 함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사회개발 · 보존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보존----------
3. ~ 15. (생 략)	3. ~ 15. (현행과 같음)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제4조(구청장의 책무) ----------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 마련하여 ---------- ----------.
제6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센터의 사업)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 배치	3. ---------- 자원봉사자 배치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생 략)	제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고려하여 ----------.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 「민법」 제40조 ----------.
④ 센터를 위탁운영 시 센터장	④ ----------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1명----------.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⑥ ---------- 20명 ----------.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8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제8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
② 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만료 30일전까지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 30일 전----------.
제11조(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 및 지원하고,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설치) ------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	제12조(기능) ----------

을 심의·의결한다.	----------.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1. 자원봉사활동진흥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구성) ① ---------- ---------- ---------- ----------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 (생 략)	제14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중복지원은 하지 아니한다.	② ---------- ---------- ----------. ---------- 않는다.
<신 설>	제14조의2(자원봉사캠프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생 략)	제16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자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② 제1항에 따른 ---------- ---------- ----------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7조(자원봉사자 포상 등) (생략)	제17조(자원봉사자 포상) (현행과 같음)
제18조(경력 인정 등) ① (생 략)	제18조(경력 인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원봉사증, 자원봉사수첩, 상패, 메달 등을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상패 및 메달 등의 지급은 연간 봉사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포상계획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3. ---------- 우수한 사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보험가입) ① (생 략)	제19조(보험가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1177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실납부자 대상 기준이 되는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참조: 재산취득세과, 전화: 879-5402, 팩스: 879-7817, email: nabi@ga.go.kr,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본관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관악구 홈페이지(http://www.gwan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중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를 "자동차세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	제2조(법령과의 관계) ---------- ----------

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 ---------- ----------.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 ---------- ---------- ---------- ---------- ---------- ---------- ----- 자동차세로 --------- ---------- ---------- ----------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1178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개정이유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 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직접사용의 범위에 건축물 뿐만 아니라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까지 확대 적용토록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신청에 대해 ‘조사·결정’ 및 ‘통지’를 ‘확인’ 및 ‘안내’로 개정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로 한다. (안 제9조의2)

나.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변경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함. (안 제10조)

다. “조사·결정”을 “확인”으로, “통지”를 “안내”로 한다.(안 제12조)

라. 제16조(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을 말한다.)에 대한 재산세 한시적 적용 세율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참조: 재산취득세과, 전화: 879-5402, 팩스: 879-7817, email: nabi@ga.go.kr,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본관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관악구 홈페이지(http://www.gwan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로 한다.

제10조 중 “(직접사용의 의미)”를 “(직접 사용의 범위)”로 “직접사용”을 “직접 사용”으로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을 “감면대상 업무”로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서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결정”을 “확인”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으로, “통지”를 “안내”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을 말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의 직접사용의 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효기간)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500원인 경우는 4만200원으로 한다.	제9조의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
제10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직접 사용의 범위) ----------직접 사용----------감면대상 업무---------- ---------- 건축물 및 주택----------.
제12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제12조(감면신청 등) ① ---------- ----------. ----------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안내---------.
<신 설>	제16조(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을 말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과세표

	준의 1천분의 4
제16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1180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징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징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던 비위공무원 징계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함
- 이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징계기준 등에 관한 규칙」간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안 제2조, 별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그 외 징계사유는 관악구 개별기준에 따르도록 함.
나. 경고조치(안 제3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사실 기록
다.「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중복되는 조문 및 별표 규정 삭제
1) 현행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 제9조(의결서의 작성요령)
2)「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중복 별표 삭제
- 현행 별표1(징계기준), 별표1의4(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별표1의5(청렴의 의무위반 징계기준), 별표1의6(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2(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별표3(징계의 감경기준)
라. 경과조치(부칙안 제2조)
- 상위규정인「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의 개정사항(2021. 1. 1. 시행)인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 대하여 동일한 효력을 반영하기 위하여 경과조치를 둠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감사담당관(봉천동), 전화 : 879-5103, FAX : 879-7803, 이메일 : kimenu@g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 02)879-51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관악구 홈페이지(http://www.gwanak.go.kr) 관악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징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징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징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을 의결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징계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야 한다.

년 월 일 : 불문(경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제221호)의 시행일(2021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1181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개정이유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2021.10.31.)에 따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기타 정비가 필요한 조항을 일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 (안 제2조의2)
- 기존 2021. 10. 31.에서 2026. 10. 31.로 연장
나. 기금의 재원에 ‘기금운용에 따른 대여상환금’ 추가 (안 제2조 제1항)
다. 한글맞춤법, 현행직제용어 등의 정비가 필요한 조문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 전화 : 02-879-6205, 팩스 : 02-879-7829, e-mail : jh_han@ga.go.kr, 주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4층)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관악구 홈페이지(http://www.gwan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생기는”을 “발생되는”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에 따른 대여상환금

제2조의2 중 “2021년 10월 31일”을 “2026년 10월 31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운용·관리하며 별도”를 “운용·관리하며 구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본문 중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공무원이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제3조의5제3항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팀장이”로 한다.

제3조의6의 제목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심의 · 의결”을 각각 “심의·의결”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업무 담당 팀장

제5조 중 “재학중인 자를”을 “재학 중인 사람을”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포함)전액”을 “포함) 전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우등”을 “경우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졸업후”를 “졸업 후”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고 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대여학자금의 대부금액”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졸업후”를 “졸업 후”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 하였을”을 “발생하였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조성) ① ----------.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반회계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신 설>	2. 기금운용에 따른 대여상환금
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3. ---------- 발생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6년 10월 31일----------.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생략)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운용・관리하며 구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
제3조의2(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제3조의2(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공무원이 그 직	④ 위촉위원----------

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의5(위원회의 운영) ①·② (생 략)	제3조의5(위원회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 담당팀장이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의6(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생 략)	제3조의6(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 ·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 심의·의결----------.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전문신설 2016.12.29.>	③ ---------- 심의·의결----------
제4조(기금 회계직 공무원) ①구	제4조(회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

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업무 담당 팀장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5조(대여대상) ---------- ---------- ---------- ---------- ---------- ---------- 재학 중인 사람을 ----------.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 대여 3. 졸업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사람	제6조(대여제한대상) ---------- ---------- ----------. 1. ---------- 포함) 전액 ---- 2. ---------- 경우 등 ---------- 3. 졸업 후 ----------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7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인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7조(대여회수 제한)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 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 대여학자금의 대부금액----------.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이자 및 상환) ①·② (생략)	제9조(이자 및 상환) ①·② (현행과 같음)
③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졸업 후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 발생하였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1-1184호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사항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할 예정임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 목 :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21. 07. 01.(목) ~ 2021. 07. 15.(목)
3. 게시장소 : 구보 및 관악구 홈페이지 공고란
4. 말소예정일자 : 2021. 07. 16.(금)
5.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6. 공고대상 :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자	소재지
일반음식점	2019-0094868	초이스	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5길 49, 3층 (신림동)
일반음식점	2003-0094332	낭만	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53-3, 1층 (봉천동)

7. 공지사항
- 위 공시송달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21년 07월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중 미제출시 의견이 없음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이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위생과 (☎02-879-7258)

기 타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1-17호(주차) 공영주차장 미납주차료 납부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의거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수탁 관리운영 중인 노상주차장 이용 후 주차요금이 미납된 차량에 대해 납입안내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를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통 지 명 :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납부안내 통보
2. 위반내용 : 주차장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

조에 의해 발생된 공영주차장 이용료 미납
3. 공시송달대상자 : 58소10**외52대
4. 공고(의견진술)기간 : 2021.7. 1. ~ 2021.7. 15.
5. 공고장소 : 관악구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6. 송달내용 : 위 공시송달 대상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 미납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 「주차장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하여 가산금(4배) 부과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2-2081-2600)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납부 대상

연번	차량번호	미납자명	차적주소	미납금액	입차일	출차일	수신자	비고
1	58소10**	아*에듀(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8,500	2021-05-03 22:30	2021-05-04 12:46	수취인불명	1차지로
2	53노20**	주*애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길	1,500	2021-05-28 11:42	2021-05-28 12:32	수취인불명	1차지로
3	313부34**	홍*기(탑플레이스 토탈솔루션)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20길	2,700	2021-05-02 13:28	2021-05-02 14:20	폐문부재	1차지로
4	24호58**	(주)에*스렌트카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6,200	2021-05-03 17:31	2021-05-03 19:34	폐문부재	1차지로
5	166허74**	심*숙(퍼플당구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29,700	2021-05-05 5:38	2021-05-05 19:53	폐문부재	1차지로
6	27서85**	정*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99길	3,200	2021-05-08 18:58	2021-05-08 22:15	폐문부재	1차지로
7	101호89**	이*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200	2021-05-08 16:15	2021-05-08 17:39	폐문부재	1차지로
8	149호60**	김*옥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대사동길	1,700	2021-05-07 19:26	2021-05-08 0:57	폐문부재	1차지로
9	29서09**	장*진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7,000	2021-05-07 17:40	2021-05-07 22:34	폐문부재	1차지로
10	25무39**	전*선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내린천로	1,200	2021-05-08 19:17	2021-05-08 19:39	폐문부재	1차지로
11	15두80**	박*훈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6,500	2021-05-09 12:30	2021-05-09 14:38	폐문부재	1차지로
12	29더66**	홍*곤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16가길	1,500	2021-05-10 19:00	2021-05-10 19:28	폐문부재	1차지로
13	26하06**	조*형	경기도 광명시 서면로	3,500	2021-05-10 18:51	2021-05-11 0:49	폐문부재	1차지로
14	16거04**	안*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2,800	2021-05-12 13:29	2021-05-12 15:02	폐문부재	1차지로
15	167하66**	이*희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	8,700	2021-05-12 17:07	2021-05-12 22:29	폐문부재	1차지로
16	94부59**	최*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78번길	6,200	2021-05-13 12:58	2021-05-13 15:00	폐문부재	1차지로
17	24부25**	김*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2로	4,500	2021-05-16 12:25	2021-05-16 13:55	폐문부재	1차지로
18	21머40**	신*규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문화마을길	700	2021-05-14 15:50	2021-05-14 16:02	폐문부재	1차지로
19	15고67**	김*철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129번길	300	2021-05-16 19:29	2021-05-16 21:57	폐문부재	1차지로
20	09조56**	김*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318번길	1,700	2021-05-15 13:58	2021-05-15 14:30	폐문부재	1차지로

21	246라45**	최*정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700	2021-05-16 14:21	2021-05-16 15:15	폐문부재	1차지로
22	60나68**	조*선(디스페로 컴퍼니)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28나길	7,500	2021-05-17 17:34	2021-05-17 22:05	폐문부재	1차지로
23	23어80**	이*랑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67번길	3,700	2021-05-17 15:58	2021-05-17 17:09	폐문부재	1차지로
24	28누15**	홍*우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74번길	5,200	2021-05-16 21:45	2021-05-17 11:42	폐문부재	1차지로
25	58노15**	정*근	서울특별시 관악구 참숯1길	2,200	2021-05-17 17:44	2021-05-17 18:29	폐문부재	1차지로
26	24저95**	서*수	경기도 화성시 배양북길	1,000	2021-05-17 13:54	2021-05-17 14:10	폐문부재	1차지로
27	48고55**	김*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49길	1,700	2021-05-19 17:05	2021-05-19 17:36	폐문부재	1차지로
28	91노77**	이*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삼로5길	6,400	2021-05-20 16:27	2021-05-20 20:00	폐문부재	1차지로
29	139더40**	홍*표	경기도 오산시 밀머리로21번길	2,200	2021-05-20 19:15	2021-05-20 21:09	폐문부재	1차지로
30	390머56**	김*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1,200	2021-05-20 13:00	2021-05-20 13:24	폐문부재	1차지로
31	36호80**	박*춘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13,500	2021-05-23 10:00	2021-05-23 19:00	폐문부재	1차지로
32	86로14**	신*승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2,500	2021-05-22 11:20	2021-05-22 12:08	폐문부재	1차지로
33	34소24**	정*석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260번길	3,200	2021-05-21 18:58	2021-05-22 0:37	폐문부재	1차지로
34	50가50**	백*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길	1,200	2021-05-22 11:20	2021-05-22 11:42	폐문부재	1차지로
35	49호76**	황*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7길	14,000	2021-05-21 10:44	2021-05-22 6:56	폐문부재	1차지로
36	86버58**	최*욱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3,200	2021-05-23 17:54	2021-05-23 18:55	폐문부재	1차지로
37	32우24**	강*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3,700	2021-05-23 11:44	2021-05-23 12:58	폐문부재	1차지로
38	391마73**	이*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3길	1,200	2021-05-24 13:35	2021-05-24 14:00	폐문부재	1차지로
39	80버94**	오*순	경기도 시흥시 신천1길	1,500	2021-05-24 9:45	2021-05-24 10:28	폐문부재	1차지로
40	59마86**	주식회사 *든트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000	2021-05-25 10:49	2021-05-25 11:29	폐문부재	1차지로
41	54누72**	임*득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12길	1,500	2021-05-26 15:57	2021-05-26 16:27	폐문부재	1차지로
42	307부67**	엄*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	5,200	2021-05-27 11:14	2021-05-27 12:57	폐문부재	1차지로
43	48호15**	우*수	경기도 부천시 역곡로496번길	3,500	2021-05-27 18:34	2021-05-27 19:44	폐문부재	1차지로
44	307노67**	최*진	경기도 의왕시 옥박골서길	1,900	2021-05-29 10:38	2021-05-29 11:40	폐문부재	1차지로
45	83고51**	이*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옛14길	11,700	2021-05-28 16:06	2021-05-28 22:20	폐문부재	1차지로
46	29두87**	김*환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4,000	2021-05-28 18:44	2021-05-28 21:30	폐문부재	1차지로
47	88도78**	조*인	경기도 평택시 평택5로	12,500	2021-05-28 15:53	2021-05-29 0:09	폐문부재	1차지로
48	02주01**	윤*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9길	21,000	2021-05-30 13:01	2021-05-30 20:32	폐문부재	1차지로

49	82조22**	전*훈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2길	2,200	2021-05-30 13:06	2021-05-30 13:48	폐문부재	1차지로
50	81루02**	유*회사 나산주류상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14길	1,200	2021-05-13 15:07	2021-05-13 15:28	폐문부재	1차지로
51	81루02**	유*회사 나산주류상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14길	1,000	2021-05-27 14:55	2021-05-27 15:12	폐문부재	1차지로
52	54수40**	조*호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오안여내길	1,200	2021-05-22 16:04	2021-05-22 16:28	폐문부재	1차지로
53	54수40**	조*호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오안여내길	1,700	2021-05-26 16:04	2021-05-26 16:39	폐문부재	1차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1-18호(주차) 부정주차요금 미납차량 납입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의거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수탁 관리운영 중인 부정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해 납입안내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통 지 명 : 부정주차요금 미납차량 납입안내 통보
2. 위반내용 : 「주차장법」 제9조 내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해 발생된 부정주차요금 미납분
3. 공시송달대상자 : 46호53** 외 55명
4. 공고(의견진술)기간 : 2021. 7. 1. ~ 2021. 7. 15.
5. 공고장소 : 관악구청 및 공단 홈페이지, 관악구보
6. 송달내용 : 위 공고 대상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 까지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 부정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경과 시 「주차장법」 제9조 내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2-2081-2671)

부정주차요금 미납차량 납입고지서 공고명단

연번	차량번호	미납자명	단속일자	단속구간	미납금액	주소	수신자
1	46호53**	(주)모바*세상	2021-05-25 19:07	11-3-6 O	12,000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수취인불명
2	01호08**	이비이*지(주)	2021-05-29 7:02	국사봉주차장	12,000	[18573]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남양만로	이사불명
3	61도33**	안*주	2021-05-31 16:13	12-8-3 O	12,000	[06278]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폐문부재
4	17누71**	김*기	2021-05-31 16:11	대학동제1공영	12,000	[1394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388번길	폐문부재
5	24호55**	강*신	2021-05-28 17:02	7-30-1 O	12,000	[6313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광로	폐문부재
6	149러54**	전*규	2021-05-26 23:57	낙성대제3공영 / O	12,000	[08799]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역8길	폐문부재
7	09하79**	홍*연	2021-05-26 11:23	남현동제2공영	12,000	[11301] 경기도 동두천시 봉동로	폐문부재
8	27서92**	안*연	2021-05-17 22:32	21-102-10 O	12,000	[061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길	폐문부재

9	37서89**	장*우	2021-05-16 20:10	11-71-4 O	12,000	[1406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의길	폐문부재
10	271어47**	LI R**XUAN	2021-05-15 19:13	11-3-2 O	12,000	[08793]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폐문부재
11	39버43**	김*길	2021-05-14 15:03	11-3-6 O	12,000	[27178] 충청북도 제천시 탑안로4길	폐문부재
12	24보26**	정*영	2021-05-13 10:59	4-35-5 O	12,000	[18482]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1길	폐문부재
13	28도46**	고*풍	2021-05-12 12:10	전6-22-4	12,000	[08774]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25길	폐문부재
14	48마98**	김*예	2021-05-10 8:33	4-16-9 O	12,000	[0250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16길	폐문부재
15	30라05**	유*민	2021-05-06 22:30	18-48-4 O	12,000	[10909] 경기도 파주시 하우2길	폐문부재
16	45로30**	정*휘	2021-05-03 23:52	22-99-4 / O	12,000	[17736]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35번길	폐문부재
17	43더03**	한*빈	2021-05-01 17:16	22-7-7 O	12,000	[06136]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폐문부재
18	49저60**	김*용	2021-05-29 0:36	대학동제1공영	12,000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폐문부재
19	49저60**	김*용	2021-05-28 0:16	대학동제1공영	12,000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폐문부재
20	49저60**	김*용	2021-05-21 8:59	대학동제1공영	12,000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폐문부재
21	49저60**	김*용	2021-05-20 22:51	대학동제1공영	12,000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폐문부재
22	49저60**	김*용	2021-05-18 10:19	대학동제1공영	12,000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폐문부재
23	49저60**	김*용	2021-05-18 4:15	대학동제1공영	12,000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폐문부재
24	49저60**	김*용	2021-05-17 20:48	대학동제1공영	12,000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폐문부재
25	49저60**	김*용	2021-05-17 16:47	대학동제1공영	12,000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폐문부재
26	49저60**	김*용	2021-05-17 12:43	대학동제1공영	12,000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폐문부재
27	49저60**	김*용	2021-05-17 8:44	대학동제1공영	12,000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폐문부재
28	49저60**	김*용	2021-05-16 23:49	대학동제1공영 /김성영	12,000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폐문부재
29	49저60**	김*용	2021-05-16 19:14	대학동제1공영	12,000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폐문부재
30	49저60**	김*용	2021-05-16 15:12	대학동제1공영	12,000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폐문부재
31	49저60**	김*용	2021-05-16 10:57	대학동제1공영	12,000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폐문부재
32	49저60**	김*용	2021-05-15 12:56	대학동제1공영	12,000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폐문부재
33	49저60**	김*용	2021-05-15 8:56	대학동제1공영 /허예기	12,000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폐문부재
34	49저60**	김*용	2021-05-15 4:37	대학동제1공영	12,000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폐문부재
35	49저60**	김*용	2021-05-15 0:36	대학동제1공영	12,000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폐문부재
36	49저60**	김*용	2021-05-14 20:35	대학동제1공영	12,000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폐문부재

37	49저60**	김*용	2021-05-14 16:13	대학동제1공영	12,000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폐문부재
38	49저60**	김*용	2021-05-14 12:09	대학동제1공영	12,000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폐문부재
39	49저60**	김*용	2021-05-14 7:59	대학동제1공영 /윤현민	12,000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폐문부재
40	49저60**	김*용	2021-05-14 2:16	대학동제1공영	12,000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폐문부재
41	49저60**	김*용	2021-05-13 20:41	대학동제1공영	12,000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폐문부재
42	49저60**	김*용	2021-05-13 16:30	대학동제1공영	12,000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폐문부재
43	49저60**	김*용	2021-05-13 12:17	대학동제1공영	12,000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폐문부재
44	49저60**	김*용	2021-05-13 7:49	대학동제1공영 /천동범	12,000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폐문부재
45	49저60**	김*용	2021-05-12 21:06	대학동제1공영	12,000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폐문부재
46	49저60**	김*용	2021-05-12 17:04	대학동제1공영	12,000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폐문부재
47	49저60**	김*용	2021-05-12 13:03	대학동제1공영	12,000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폐문부재
48	49저60**	김*용	2021-05-12 8:51	대학동제1공영	12,000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폐문부재
49	49저60**	김*용	2021-05-10 14:24	대학동제1공영	12,000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폐문부재
50	49저60**	김*용	2021-05-06 8:31	대학동제1공영 /정동기	12,000	[24465]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소주고개로	폐문부재
51	68우25**	정*숙	2021-05-17 16:43	대학동제1공영	12,000	[16833]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폐문부재
52	68우25**	정*숙	2021-05-17 12:41	대학동제1공영	12,000	[16833]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폐문부재
53	69소31**	홍*철	2021-05-20 0:06	대학동제1공영	12,000	[16833]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폐문부재
54	69소31**	홍*철	2021-05-19 15:24	대학동제1공영	12,000	[16833]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폐문부재
55	69소31**	홍*철	2021-05-19 8:57	대학동제1공영 /윤현민	12,000	[16833]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폐문부재
56	69소31**	홍*철	2021-05-18 23:13	대학동제1공영	12,000	[16833]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1-19호(주차) 공영주차장 미납주차료 납부고지서 송달불능분 공시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의거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수탁 관리운영 중인 노상주차장 이용 후 주차요금이 미납된 차량에 대해 납입안내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를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통 지 명 :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납부 안내 통보
2. 위반내용 : 주차장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

조에 의해 발생된 공영주차장 이용료 미납
3. 공시송달대상자 : 40모29**외21대
4. 공고(의견진술)기간 : 2021.7. 1. ~ 2021.7. 15.
5. 공고장소 : 관악구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6. 송달내용 : 위 공시송달 대상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 미납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 「주차장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하여 가산금(4배) 부과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02-2081-2600)

공영주차장 미납주차요금 납부 대상

연번	차량번호	미납자명	차적주소	미납금액	입차일	출차일	수신자	비고
1	40모29**	㈜*원디에스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5,000	2021-04-04 10:57	2021-04-04 11:13	수취인불명	2차지로
2	31나90**	변*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18,500	2021-04-09 11:10	2021-04-09 12:23	수취인불명	2차지로
3	02하41**	(주)국*렌트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8,500	2021-04-15 15:18	2021-04-15 16:30	이사불명	2차지로
4	85로78**	황*종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헌17길	5,000	2021-04-26 21:12	2021-04-27 10:16	이사불명	2차지로
5	19루60**	박*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3길	6,000	2021-04-14 16:30	2021-04-14 16:51	주소불명	2차지로
6	63우27**	최*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142,500	2021-04-18 5:34	2021-04-18 19:30	주소불명	2차지로
7	55호84**	이*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5,000	2021-04-27 17:07	2021-04-27 17:25	주소불명	2차지로
8	11루93**	이*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2길	10,000	2021-04-03 10:04	2021-04-03 10:41	폐문부재	2차지로
9	11보31**	이*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0,000	2021-04-03 18:04	2021-04-04 0:44	폐문부재	2차지로
10	287부26**	김*혜	경기도 화성시 수노을1로	5,000	2021-04-06 16:57	2021-04-06 17:16	폐문부재	2차지로
11	101호96**	윤*항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33,500	2021-04-11 4:14	2021-04-11 12:11	폐문부재	2차지로
12	30조79**	박*옥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10,000	2021-04-10 15:33	2021-04-10 16:12	폐문부재	2차지로
13	40보55**	이*영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5,000	2021-04-10 11:36	2021-04-10 11:54	폐문부재	2차지로
14	09저04**	유*민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7,500	2021-04-12 19:10	2021-04-12 19:36	폐문부재	2차지로
15	73서65**	이*영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5,000	2021-04-16 14:36	2021-04-16 14:53	폐문부재	2차지로
16	49다61**	박*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	8,500	2021-04-16 11:41	2021-04-16 12:16	폐문부재	2차지로
17	01너36**	임*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3,500	2021-04-18 12:32	2021-04-18 12:46	폐문부재	2차지로
18	39노18**	이*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7,500	2021-04-18 10:22	2021-04-18 10:49	폐문부재	2차지로
19	13머11**	김*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67길	12,500	2021-04-19 19:14	2021-04-19 20:04	폐문부재	2차지로
20	04호94**	소*훈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회단지17길	11,000	2021-04-23 12:05	2021-04-23 12:46	폐문부재	2차지로
21	72거16**	구*모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3가길	5,000	2021-04-25 0:19	2021-04-25 10:16	폐문부재	2차지로
22	54수40**	조*호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오안여내길	8,500	2021-04-30 16:52	2021-04-30 17:24	폐문부재	2차지로